

【제97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부록】

2004. 1. 31(토)  
제97회임시회제2차본회의

# 심 사 보 고 서

-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 자 치 행 정 위 원 회

##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 1. 20. 제 천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4. 1. 26.  
다. 상 정 일 자 : 2004. 1. 28.(제97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 가. 제안이유

- 표준정원제 시행과 조직개편 이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개선방안 해결을 위하여 담당(팀)의 신설과 명칭변경 및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부서 명칭변경 : 홍보과 ⇒ 홍보체육과
- 분장사무 신설
  - 자치행정국 : 정보화사업추진(전산담당 신설)
  - 관광건설국 : 관광시설물 관리 및 운영(관광시설담당 신설), 자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자원관리담당 신설), 꽃 도시가꾸기사업 추진(도시녹화담당),개발촉진지구지정 및 관리, 도시기본계획 수립(개발촉진담당 신설)
  - 농업기술센터 : 친환경농업 육성(작물환경담당을 친환경농업담당으로 개정)
- 분장사무 조정
  - 물관리 종합대책 업무 : 수도사업소 ⇒ 관광건설국
  - 한강수계관리기금 업무 : 환경관리사업소 ⇒ 관광건설국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후준)

#### 가. 법적검토

- 지방자치법제10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구의 행정기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였고, 동 규정의 위임으로 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1항의 규정에서 인구 규모별 기구설치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의 규정에서 설치기준의 범위안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기구의 명칭변경도 자율적인 사항이며,
- 동 규정 제14조(표준정원의 책정)지방자치단체는 정원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정원의 범위 안에서 정원을 책정할 수 있으므로 동 규정에 의거 우리시는 현정원 913명에 표준정원 948명, 보정정원 976명으로 표준정원 35명의 범위내에서 조정 할 수 있으므로 33명의 증원의 범위내에서 5개담당(전산담당, 관광시설담당, 자원관리담당, 도시녹화담당, 개발촉진담당)을 신설하고 과 및 담당의 명칭을 변경코저 하는 것은 법규적 하자는 존재하지 아니함.

#### 나. 행정적 검토

- 표준정원제 시행등 지침에 의하면 시군의 담당설치는 5급 기준의 정원이 내에서 4인(담당포함)이상의 업무담당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바, 담당의 신설은 실과 업무의 직무분석을 통하여 4인 이상의 업무량이 증가되었다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타당성이 검증되어야 할 것이며,
- 부서별 담당조정안에 산림녹지과는 현재4개 담당에 15명에서 5개담당에 17명으로 조정되면 과장을 제외하면 1개담당에 3.2명씩이고 회계과는 4개담당에 34명으로 7.8명, 수도사업소는 6개담당에 58명으로 9.7명, 세정과는 6개담당에 35명으로 5.2명에 해당되므로 정원조정시 검토대상이며

**【제97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부록】**

-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설치·명칭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의하면 기구명칭 부여시 고려원칙으로 주민의 이해가 쉽도록하고 주민지향적 명칭을 사용하되 공공성도 고려(민간기업과는 다름) 대외적(국민)뿐만아니라 대내적 고객(공무원)이해 할 수 있는 명칭을 부여하여야만 하고, 수행하는 핵심기능을 명칭에 함축적으로 표현 기능과 명칭간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시군구간의 명칭의 통일성의 확보와 중앙, 시도, 시군구의 연계성을 위한 명칭의 균형성을 유지하되 자율과 조화속에 기구명칭을 표준화하도록 되어 있는바, 우리시의 조직개편 및 인사운영실태조사 보고에 의하면 부서명칭 조정안으로 여러가지 대안중에 우선
  - 홍보과를 홍보체육과로 개정코져 함은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나, 관청에서 주민에게 널리 알리는 것은 公報라하고 弘報는 일반에 널리 알리는 용어로서 관청의 기구명칭은 홍보체육과보다는 공보체육과가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 자치행정과의 전산통신담당을 전산담당과 정보통신담당으로, 산림녹지과의 도시녹화담당, 도시개발과의 개발촉진담당은 업무상의 성격상 바람직한 명칭이라 사료되나
  - 문화관광과의 관광시설담당은 기존의 관광사업담당과 구분이 어렵고, 자연환경과의 자원관리담당은 자원관리센터의 조성업무를 수행 하다고 하지만 자원관리 담당은 대내외적으로 이해가 난이한 명칭으로 보다 적당한 명칭이 부여되어야 할 것임.
  - 농업기술센터의 작물환경담당을 친환경농업담당으로, 수도사업소의 물관리담당을 간이상수도담당으로 변경하는 것은 업무의 기능과 맞게 조정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 할 것임.
-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기구설치 및 공무원증원계획에 의하여 추진코져 하였으나 상급부서 불승인으로 시행하지 못한
  - 청풍관광시설사업소 관광시설담당으로, 기업유치팀은 기업유치 전문인력(계약직)으로 조정되었지만,
  - 물관리사업소 차량등록관리소의 5급이상 정원의 불승인에 따른 6급이하의 기구 및 인원조정사유는 없는지 신중 검토되어야 할 것임.

## 4. 질의답변 요지

### 가. 질의요지

- 기구명칭은 주민이 이해하기 쉽고 같은 조직 내에서도 이해가 빨라야 하며, 공무원조직은 전국적으로 거의 통일된 명칭을 갖고 있는데 우리시도 공보체육과로 변경하면 어떤지?(유영화 위원)
- 지난번에 기구확대를 위해서 도를 경유하여 행정자치부에 기구승인 요청을 했는데 하나도 승인되지 않은 것은 사전준비작업이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되고, 확대 개편하려고 상부기관에 승인 요청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등을 확인해 보시지 않고 신청 한 건지(유영화 위원)
- 공보하고 홍보를 명확하게 어떻게 구분하는지 기관에서 하는 것이 홍보인지, 공보인지(김기상 위원)
- 대내적으로 시민에게 알리는 것은 공보고 넓게 포괄적으로 다분야의 이미지를 알리는게 홍보라고 한다면 중앙정부에서도 홍보부라고 하지 문화공보부라 던지 과거에 쓰던 그럼 명칭을 쓰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김기상 위원)
- 자원관리센터 조성업무는 지금 청소시설담당에서 하고 있는지 자원관리담당을 신설하면 업무의 증가인지 아니면 지금하고 있는 것이 한시적인 기구인지 또 조성업무가 끝나면 어떠한 업무를 담당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바람.( 최창규 위원)
- 당초에 기구개편하면서 기술센터와 농업축산과을 통합하면서 굉장히 민감하게 대두가 되었지만, 지금까지도 업무를 추진해 오면서 희석이 잘 안 되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김진학 위원)

### 나. 답변요지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 적극적인 자세로 제천을 알리고 홍보하고 제천의 지역경제라던가 위상을 제고시키는 면에서 접근 홍보과로 개정 한 것으로 알고 있는바, 홍보과 내에는 홍보체육업무를 같이 하고있기 때문에 그 명칭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홍보체육과로 정정하게 됨.

**【제97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부록】**

- 관광시설사업소나 차량등록사업소는 기준치 문제하고, 15만이하의 시군의 사업소설치는 제천시와 상당히 많은 것을 이유로 해서 불승인되었고, 이러한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상정할 계획을 갖고 있음.
- 공보라고 하면 대내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시민들한테 알리는 일이고, 홍보라고 하면 어떠한 1개분야가 아니라 다분야에 대한 제천시 지역에 대한 이미지나 이러한 것들을 대외에 알리는 사항임.
- 공보보다는 홍보가 더 폭넓은 범주가 아니야 하는 쪽으로 판단되어 제천시 경우에는 지역에 모든 일들을 같이 포괄적으로 널리 알리는 것으로 홍보라고 볼 수 있음.
- 현재 청소시설담당의 업무는 쓰레기매립장관리, 각종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인 허가 문제 또 현재 신설되고 있는 자원관리센터의 시설업무로 크게 3가지 정도로 국한 둘 수 있음.
- 두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음  
한가지는 사무실이 이완되어서 운영이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각 기구의 직원들이 별개로 있기 때문임.

**5. 소수의견**

“없 음”

**6. 토론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심사보고 붙임서류**

-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부